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번호 제42호 99. 9. 11)

총무위원회
1999. 9. 20

1. 심사경과

- 가. 1999. 9. 11 사천시장 제출
- 나. 1999. 9. 13 총무위원회 회부
- 다. 1999. 9. 15 제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2. 제안설명 요지(행정과장 최문섭)

가. 제안이유

봉계취락지구개발사업이 인가됨에 따라 면사무소 소재지 주변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기 위함.

나. 주요골자

이장정수 중 사남면 월성리의 정원“2”를 “4”로 하고 관할구역인 “월성, 곡성일원”을 “월성1리, 월성2리, 월성3리, 곡성일원”으로 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성호영)

사남면 월성일원의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의 리체계로는 업무처리에 애로가 많아 이를 적정한 인구규모로 리를 분할하고 이장의 수를 증원시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봄.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이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 없음